제303회 ●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1. 12. 1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2894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 출 일 : 2021. 10. 15.

다. 회 부 일 : 2021. 10. 20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'서울여담재'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서울여담재의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 제1항제5호 및 별표 9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45조,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제29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참조

2) 입법예고('21. 9. 9.~9. 29.)결과: 의견없음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○ 동 조례안은 동대문구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(구 원각사)을 리모델 링하여, 여성의 역사를 보전하고 있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여성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2020년 1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'서울여담재'의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.

2 주요사항 검토

- □ 서울여담재의 이용료 규정 (안 제1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9 신설)
 - 개정안은 서울여담재¹⁾²⁾의 이용료 부과·징수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임.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	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-
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	
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	
사람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에	
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	
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하여야	
한다.	.

^{1) 「}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

현 행	개 정 안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서울여담재 : 별표 9의 범위
	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 구체적으로는 안 별표 9에 역사문화교육의 교육료와 교육소통공 간의 이용료에 대한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, 이는 동 개정안의 이용료 산정 내용과 유사한 현행 조례 제18조 제1항제3호3) 및 별표 8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생활문화교육과

- 1. 여성사 자료 발굴 · 보존 · 연구 및 공유
- 2. 여성사 자료관 운영
- 3. 교육 · 문화 · 전시 프로그램 운영
- 4.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
- 3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8조(이용료의 부과・징
- 수)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"이용자" 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 - 3. 여성발전센터 :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
-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해당 여성관련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

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^{6.} 서울여담재 : 여성사 자료 발굴·보존·연구 및 공유, 교육·문화·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^{2) 「}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2조의2(서울여담재 명 칭 및 기능 등) ① 제4조제6호에 따른 서울여담재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의2와 같 다.

② 서울여담재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교육실 및 회의실의 이용료 기준금액을 반영한 것임.

〈서울여담재 이용료 부과 기준(안 별표 9)〉

구 분	단위	기준금액	비고		여성발전센터
역사문화교육	1명 1개월	15,000원~ 50,000원		←	생활문화 교육
교육소통공간 (서울여담재 2층)	1시간	5,000원~ 20,000원	· 시간당 단가이며, 1시 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· 토, 일, 공휴일은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.	=	교육실 및 회의실

주 :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기준은 현행 조례 별표 9에서 일부 발췌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136조4)및 제139조5)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—————— 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,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4) 「지방자치법」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5) 「지방자치법」제139조(사용료의 정수조례 등) ① 사용료・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・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○ 이에 개정안은 서울여담재의 이용료 부과·징수의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.

3 종합 의견

- 조례안은 2020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여담재의 사용료 기준을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 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 사용료 기준으로 삼았던 여성발전센터의 경우, 현행조례 제 19조제3항⁶⁾에 따라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, 저소득 한부모가족,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^{6) 「}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

③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

^{1.}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: 해당 이용료 각각 면제. 다만, 제17조제2항제1호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각각 100분의 50을,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관한 조례」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'다둥이 행복 카드' 소지자에게는 100분의 20을 줄인다.

장애인 등에게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있는 바, 서울여담 재의 이용료 감면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^{2.} 그 밖에 교육과정의 이용률, 교육운영시간,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: 해당 교육과정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

서울여담재 운영사업 개요

□ 추진목적

○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,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여성들의 삶을 알리는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

□ 시설개요

○ 위 치 : 종로구 창신동 7-26(시유지)

○ 규 모 : **2개동 연면적 763** m²(지하3/지상2층)

○ 시 설 : 자료관, 여성역사 배움공간, 주민공유공간 등

○ **구 성** : 건물 2개 동(연면적 763*m*²),



- 본관(A동, 지하1·지상1, 총 376㎡, 리모델링), 별관(B동, 지하3·지상2, 총 387㎡, 증축)

=	구 분	면적(m²)	주요용도(안)
	지상1층	153.44	여성 교양도서 코너(여성역사 서가 및 열람 공간)
A동 자하1층	222.61	여성역사 전문도서 코너, 여성역사 배움 공간(강의실, 영화	
		상영관 등), 어린이 도서 놀이방 등	
B동 지상2층	140.01	여성사 전시 공간, 여성사 프로그램실(세미나, 동아리 소모	
	^rö2 - -	l2층 140.81	임 활동 등), 휴게공간(소규모 카페)

□ 사업내용

○ 여성사 자료관 운영 : 여성사 관련 장서 확보 및 비치, 도서 열람 및 대출 운영

○ 여성사 자료 발굴·공유 : 생활역사·역사인물·구술자료 발굴, 아카이빙 및 전시 등

○ 여성사 프로그램 운영 등 : 강좌 및 토론, 여성역사 탐방 프로그램, 영화 상영 등

□ 위탁현황

○ 수탁자: (사)여성문화예술기획(대표:이혜경)

○ 위탁기간 : 2020.11.1.~23.10.31.(3년)

○ 운영인력 : 총 4명(관장 1명, 팀장 1명, 직원 2명)

○ 2021년 예산 : 349,286천원